

보도일시			배포일시	2022. 1. 19(수) 배포
비고	# 공동배포 : 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, 공정거래위원회, 경찰청			
담당	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		과장 이경제, 경위 변지환 (044-200-2375, 2377)	
	고용노동부	노사관계지원과	과장 김승환, 서기관 백석현 (044-202-7620, 7621)	
		공정채용기반과	과장 이부용, 사무관 정다비 (044-202-7432, 7436)	
	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		과장 우정훈, 사무관 나은종 (044-201-3538, 3539)	
	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		과장 전상훈, 사무관 김혜인 (044-200-4551, 4553)	
	경찰청 수사과		과장 송영호, 경정 최연석 (02-3150-2068, 1144)	

건설현장 채용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!

- 「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」 구성 이후, 과태료 4건 부과 절차 진행(총 6천만원), 103명 검찰 송치(1명 구속), 공정거래법 위반 20여건 조사 진행 중

- 국무조정실(국무1차장 주재)은 '22.1.19. 관계부처 합동 「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」 회의를 개최하여, 그간의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.

* 참석: 국무조정실 제1차장·사회조정실장·고용식품의약정책관, 고용부 노동정책실장, 경찰청 수사국장,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, 국토부 건설정책과장 등

- 정부는 일부 노조의 自 조합원 채용강요·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*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, 작년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약 100일 간(21.10~12) 집중 점검·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.

* 채용강요, 장비(배차 등)·금품(월레비 요구), 불법 점거, 태업, 폭행·상해 등

- 불법 행위가 여러 부처 소관업무에 걸쳐있는 점을 감안, 갈등이 심각한 현장에 대해 지역별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

- 현장 관계자 면담 등 불법행위 파악 및 정보공유, TF 합동 점검, 관계법(채용절차법·공정거래법·형법) 적극 적용으로 대처하였습니다.

□ 그 결과, 전국 여러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-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상 ‘채용강요 등 행위’를 구체화하는 지침(12.6)을 마련·시행함으로써,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적극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.

- 현재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4건의 과태료(총 6천만원)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며, 추가 조사 중인 6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.

· (A 현장) 새로운 타워에 기노조 조합원이 채용되자 기존 타워를 운행하던 타 노조 기사들이 작업거부·집회하여 기노조 기사 채용 무산

- 경찰청은 주요 현장에 대해 시·도청 집중관리 및 수사 지휘, 대응 사례 공유 등 관계부처 TF 활동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.

-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(구속 1명)하였으며,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

· (B 현장) 건설현장에서 무리지어 횡단하고, 동전을 바닥에 뿌린 후 좁은 등 차량 통행 방해 → 피의자 24명 불구속 송치

-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*이며, 금년 상반기 내 신속히 처리 완료할 계획입니다.

*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노조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 가능

- 이를 위해 ▲담당인력 보강, ▲지방사무소 간 협업 등 신속한 제재 조치를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.

- 아울러, 올해 1월에는 전국건설노조의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.

○ 한편, 국토부에서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관계부처에서 효과적으로 파악·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을 일원화하였습니다.

- 그간 건설협회·전문건설협회·노총 등에 있던 신고센터를 작년 11월부터 국토부에서 직접 운영하였으며(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), 그 결과 신고건수가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.

· (이전) 지난 2년 간 신고내용 노출 우려·홍보 부족 등으로 신고실적 0건 → (개선) 일 평균 3건 내외 신고·문의, 접수된 사건 중 33건 부처에 처리요청,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에서도 관련 TF를 신설하여 국토부에 정보 제공 예정

□ 정부는 약 100일 간의 TF 활동에 따른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,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.

○ 이에 따라, 그간의 TF 점검사례를 토대로 현장 집행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, 법·제도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□ 국무조정실 윤창렬 제1차장은 “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각 부처가 각자 대응하다보니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”고 하며,

○ “지속적인 관계부처(고용·국토부, 공정위, 경찰청)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, 불법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”고 강조했습니다.

○ 아울러, “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,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,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”고 밝혔습니다.

〈고용노동부〉

❖ 법 적용 실효성 제고를 위해 '채용강요 등 금지' 관련 내용을 지침으로 구체화* 시달(12.6) → 지침 구체화 후 과태료 4건 부과

□ (사례 1) 채용압력 인정, 채용협의 및 집회 결정권자 각 1,500만원 부과

-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他 조합원을 채용하자 기존 自 조합원이 운행하던 타워크레인 운행 중지 및 집회·시위

□ (사례 2) 채용압력 인정, 채용협의 및 집회 결정권자 각 1,500만원 부과

-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他 조합원을 채용하자 기존 自 조합원이 운행하던 타워크레인 운행 중지 및 집회·시위, 결과적으로 1개의 타워에 다수의 근로자가 채용(기존 채용자 대기, 自 조합원 추가 채용)

〈국토교통부〉

❖ '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'* 신설 운영(11.24) 이후, 접수된 사건 중 각 부처에 33건 통보하여 조사 중(일 평균 3건의 신고·문의)

* 건설협회, 민주한국노총 등에서 운영되던 신고센터를 국토부에 직접 설치·홍보로 실효성 확보

□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운영

- '19.7월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건설협회·전문건설협회, 민주·한국노총에 설치하여 운영 → 신고내용 노출 우려, 홍보부족 등으로 2년간 실적 0건
- 국조실 주관 「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」 운영에 발맞춰 국토부에 직접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보도자료 배포(11.23)
 - 아울러, 건설관련 사업주 단체를 통해 채용갈등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고, 신고절차, 신고시 필요 증거자료, 처리절차 등을 홍보

〈경찰청〉

❖ 분쟁·마찰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경력 배치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사법처리* 기조 → TF 출범 이후 103명 송치(1명 구속)

- * ▲ 대규모 충돌 방지, 극렬행위자 현장 검거, 주요상황 발생 시 지휘관 현장 입장 등 적극 대응
- ▲ 주요 불법행위 현장은 시·도청 집중 관리 및 수사지휘, 대응사례 공유 등으로 必罰

□ 주요 불법행위 대응 사례

- '21.10.11~14, 경기지역 건설현장에서 自노조원 고용 요구하며 타워크레인 점거 → 4일간 현장 관리하며 피의자 **현행범 체포**(10.14)
- '21.2월~10월 강원 원주 건설현장 등에서 집회 중 현장 입구를 막아 출입방해 등 → **현행범 체포**(1명 구속, 2명 불구속, 10.14)
- '21.10.22. 경기 파주 건설현장 앞에서 自 노조원 고용 요구하며 미신고 집회 개최 및 사측 직원 폭행 → 피의자 2명 **현행범 체포**(10.22)
- '21.8.30 경기 포천 건설현장 앞에서 무리지어 횡단하고, 동전을 바닥에 뿌린 후 좁는 등 차량 통행 방해 → 피의자 **24명 불구속 송치**(11.3)

〈공정거래위원회〉

❖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조사 → 건설기계 임대료 결정 행위 시정조치(1.14) 외 19건 조치 예정(상반기 內)

- *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건설노조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 가능

□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제재

- 건설노조의 건설사 대상 自조합원 채용 강요 및 사업활동 방해, 건설기계 임대료 결정 행위 등 총 20건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 조사 중
 - 전국건설노조가 소속 사업자들의 건설기계 임대료를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완료*(대구, '21.1월) 외 19건 조치 예정(상반기 內)
- * 시정명령 불이행 시 검찰 고발 대상이며, 재차 법 위반 시 가중하여 과징금 부과됨
- 특히 일부 지역 내 법 위반 신고가 급증하는 등 피해 사실이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어, 신속한 조치를 위한 대응 체계 마련
 - 인력 보장, 인접 사무소 사건 분담 등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조치 강구